

『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판매업체 이용약관서』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전문 및 제1조 <생략></p> <p>제2조(업무절차)</p> <p>판매업체는 아래 업무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·제출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 은행은 중심업체의 승낙에 근거하여 제9조에 <u>정해진</u> 바에 따라 <u>팩토링 이자를 선취 후</u> 판매업체 약정계좌에 대금을 입금합니다.</p> <p>④ <생략></p> <p>제3조(팩토링 신청 및 실행)</p> 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 은행은 팩토링 실행시 정산채권 정산일(정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도래하는 첫 은행영업일)까지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업체 약정계좌에 입금합니다.</p> <p>④ <생략></p> <p>제5조~제10조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전문 및 제1조 <좌동></p> <p>제2조(업무절차)</p> <p>판매업체는 아래 업무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·제출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①~② <좌동></p> <p>③ 은행은 중심업체의 승낙에 근거하여 제9조부터 <u>제11조까지</u>에 <u>정한</u> 바에 따라 판매업체 약정계좌에 대금을 입금합니다.</p> <p>④ <좌동></p> <p>제3조(팩토링 신청 및 실행)</p> <p>①~② <좌동></p> <p>③ 은행은 팩토링 실행시 <u>대상 정산채권의 금액에서 정산채권</u> 정산일(정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도래하는 첫 은행영업일)까지 <u>계산한 팩토링</u>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업체 약정계좌에 입금합니다. <u>다만, 판매업체가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판매업체인 경우에는 팩토링 이자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입금합니다.</u></p> <p>④ <좌동></p> <p>제5조~제10조 <좌동></p> <p><u>제11조 (중심업체의 팩토링 이자 부담)</u></p>	<p>관련 조항 준용에 따른 문구정비</p> <p>팩토링 실행 시 대금 입금 기준 명확화</p> <p>중심업체의 팩토링 이자 부담에 관한 사항 신설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	<p><u>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, 중심업체가 은행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팩토링 이자 지원대상으로 지정한 판매업체(이하 “지원대상 판매업체”라 한다)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은행에 양도하는 매입채권에 대하여는 중심업체가 팩토링 이자를 부담합니다. 이 경우 은행은 해당 매입채권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팩토링 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<u>② 은행은 판매업체가 지원대상 판매업체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판매업체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합니다. 은행은 중심업체로 하여금 은행을 대신하여 위 통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③ 지원대상 판매업체의 지정은 은행이 해당 판매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전산 등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, 그 이후 판매업체가 매입을 신청하는 매입채권부터 적용합니다.</u></p> <p><u>④ 지원대상 판매업체 지정의 해제는 은행이 해당 판매업체의 지원대상 해제를 전산 반영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, 그 이후 실행되는 매입채권부터 적용합니다. 해제 전에 매입을 신청한 매입채권에 대한 팩토링 이자는 해제 이후에도 중심업체가 부담하며, 해제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<u>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판매업체에 대하여도 이 약관의 다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</u></p>	<p>지원대상 판매업체 지정 및 해제 통지 절차 신설</p> <p>지원대상 판매업체 지정 효력 발생 시점 명확화</p> <p>지원대상 판매업체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 명확화</p> <p>지원대상 판매업체에 관련 적용범위 명확화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1조(정보제공 동의) <생략>	제12조(정보제공 동의) <좌동>	제11조 신설에 따라 조 번호를 변경
제12조(약정해지) <생략>	제13조(약정해지) <좌동>	제11조 신설에 따라 조 번호를 변경
제13조(약정기한 및 효력) <생략>	제14조(약정기한 및 효력) <좌동>	제11조 신설에 따라 조 번호를 변경
제14조(준거법) <생략>	제15조(준거법) <좌동>	제11조 신설에 따라 조 번호를 변경
제15조(준거법 및 관할법원의 합의) <생략>	제16조(준거법 및 관할법원의 합의) <좌동>	제11조 신설에 따라 조 번호를 변경